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78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김미애·김정재·송석준

김위상 • 박상웅 • 정연욱

우재준 · 김종양 · 임이자

조은희 • 이종배 • 서범수

의원(12인)

제안이유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반영하여 현행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감염병의 정의를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
- 나.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 다. 질병관리청장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지정마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 라. 고위험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받도 록 하고, 저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 하도록 함(안 제59조).
- 마. 마약류중독자 등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2조제2항).
- 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안 제81조).
- 사.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소독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소독업을 승계하도록 함(안 제84조).
- 아. 제1급·제2급·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138조).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발생 또는 유행의 감시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질병을 말한다.
 - 가. 별표 1의 제1급ㆍ제2급ㆍ제3급 및 제4급감염병

- 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급·제2급·제3급 또는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
- 2. "격리감염병"이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별표 2의 격리감염병
 - 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 및 격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3.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 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4.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5.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 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6.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7.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

- 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8.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 내는 사람으로서 제36조제6항 및 제39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43조에 따른 감염병병 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9.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의 인체 침입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0.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1.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 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2. "감시"란 감염병환자등·감염병병원체·감염병매개체(이하 "감염병등"이라 한다)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13.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4. "역학조사"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 는 등의 활동
 - 나.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 다.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1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 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6.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원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고준위고위험병원체, 저준위고위험병원체를 말한다.

- 17. "의료·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의약 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말한다.
- 18. "소독"이란 물건, 시설 또는 환경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병원체를 사멸시키거나 활동력을 낮추어서 감염력을 억제하는 살균조치와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조치를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인적·물적 기반 및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감염병등의 감시
 - 2. 약제내성의 감시
 - 3.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감염병에 관한 교육
- 6.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
- 7.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8. 감염병에 관한 조사 · 분석 · 연구
- 9. 감염병병원체·감염병매개체의 수집·검사·보존·관리
- 10. 감염병 예방 ·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 11.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 1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 13.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 ·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위
-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6.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대비 교육 및 훈련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 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

리가 있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단·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있다.
-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 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이 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③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감염병 관리체계

제8조(방역관)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 여야 한다.

- ②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9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 현장의 장소 및 대상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 ③ 방역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조치권 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역학조사관)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 등의 역학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감염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④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91조제1항제2호의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일시적으로 제91조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 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그 밖의 기관으로의 인 사교류 및 파견근무
- 2. 다른 보직으로의 전보(轉補). 다만, 역학조사관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①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배치·직무·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검역위원)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 ②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 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예방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 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육·훈련)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방역관, 제9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한시적 종사요청)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감염병 검사 등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경우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장소 및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 여 감염병 역학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

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종사요청 및 제2항·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제2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2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에 관한 사항
 - 3.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 4.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5. 제29조에 따른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7. 제42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8.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9. 제77조제1항에 따라 제6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65조의 임시예 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10. 제77조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11. 제103조에 따른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12. 제105조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13. 제107조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14. 제12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 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감염병전문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 야 한다.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⑤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지정 절차, 그밖에 감염병전문병원의 운영·평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 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 서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 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 2.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운영
- 3. 의료기관 병상 동원
- ④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감염병관리기관의 준수사항)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②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 를 거부할 수 없다.
- 제20조(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평가) ① 제18조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염 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 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 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감독·지원 등 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지원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 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
 - 2. 연수원, 숙박시설 등 다수의 인원을 격리 ·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동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제18조에 따른 요양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관리시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23조(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설립)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①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자산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첨단백신센터의 사업)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 2. 감염병의 치료제 · 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 3.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27조(한국감염병관리재단의 설립)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감염병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재단이 수행하는 업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계획 및 사업

- 제28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주요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3.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방안
 - 5.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지정된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 방안
 - 6.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 7. 감염병 예방 ·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9.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환경을 포함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접근·협업 (이하 "감염병통합관리"라 한다) 방안
- 10.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 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내성균 관리대책) ①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내성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한 사항, 감시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 관별 역할
 -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 관의 명부 작성
 - 4.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시설·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 6.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
 - 7. 감염병 진단검사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 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시·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2조(업무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기본계획 및 내성균 관리대책,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기본계획 및 내성균 관리대책,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3조(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및 부처 간 공동 대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 기구(이하"협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34조(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①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위기대비 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운영·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를 준용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염병 치료제 · 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 · 분석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염병 감시 등

- 제36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檢案)한 경우
 - 2.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3.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6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제6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 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43조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 43조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 ⑤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24시간 이내. 다만,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즉시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 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3.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 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기간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은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기준, 제5항에 따른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감염병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 청장은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1조(건강진단 등) ①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 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42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 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 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 1. 질병관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3.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5.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 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 6.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 8.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 의가 상근하는 기관
-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병원체 확인의 정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지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 병 위기 시 신속하게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염병병원 체 확인기관(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중 실험실 검

사인력, 검사장비 및 검사능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위기 시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우수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최초 지정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 관이 제6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의 주기·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지정마크) ① 질병관리청장은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③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자는 거짓 지정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① 질병관리청장은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기피·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 3. 제44조제6항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7조(감염병 검사 진단제제의 직접제조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 병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시약, 대조·보정 물질 등(이하 "진단제제"라 한다)을 제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구매(연구용 제품의 구매를 포함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인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포할 수 있다.

-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된 진단제제 등이 없는 경우
-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된 진단제제 등이 있으나 진단제제 등의 생산·공급이 부족한 경우 등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인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진단제제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제제의 제조·구매·배포 및 사용을 위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단제제의 제조·구매·배포 및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8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

-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내성균 및 매개체 발생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장 또는 시·도지사
- 2.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는 행위
-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역학조사의 요청)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역학조사 등 협조요청)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정보 제공 요청)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감염병환자등, 감염병의심자 및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여권법」 제7조에 따른 여 권정보 등 인적사항
- 2. 「출입국관리법」 제32조 각 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및 연락 처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연락처
-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 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6.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1 조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7. 「통계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중 사망원인에 관한 정보
- 8.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9.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전파차단을 위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53조(정보 제공)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기관에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정보로 한정한다.
- ③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54조(개인정보보호)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 2. 제1호의 정보가 제53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 보처리에 관한 보고서(이하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 제55조(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 1.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정보
- 2. 제49조에 따른 역학조사 정보
- 3. 제52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 4. 제69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 정보
- 5. 제70조에 따른 예방접종 역학조사 정보
-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 4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명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말한다)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방역물품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 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③ 감염병정보시스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 ·관리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④ 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고위험병원체

- 제57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분양받아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생물테러감염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다른 주소지

로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57조제3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9조(고위험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또는 고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저준위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 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 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 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60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 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고 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 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 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설치·운영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상태를 3년마다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⑨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10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①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2. 제6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 4. 제60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제60조제10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 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 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62조(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 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 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 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테러감염병원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생물테러감염병병 원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 된 사람
- 4. 이 법 또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6장 예방접종

- 제6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인플루엔자
- 15. A형간염
-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6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 한 경우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6조(임시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7조(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64조제2항(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79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8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제69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제70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 제71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 판감소성 혈전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거

- 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제72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 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 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

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제74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6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 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제77조(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6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78조(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 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 4.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 보고 내용
- 5. 제70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 6. 제12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 7.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③ 보건소장 및 제64조제2항(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 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제7장 소독

- 제80조(소독의무)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2.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 3. 제9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독은 제81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81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 및 교육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독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 제81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80조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본다.
 -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

고를 한 경우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3. 제82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 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2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소독업자가 휴업한 후 재개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3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89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4조(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8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독업자(소독업을 신고하려는 자 및 제80조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며, 법인인 경우에 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6조(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제80조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제80조제3항에 따라 직접 소독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대장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매 반기마다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소독증명서를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87조(서류제출 및 점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 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점검 또는 질 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8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제8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및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8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 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제8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80조제4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 2. 제8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2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4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86조제2항에 따른 소독증명서를 거짓ㆍ허위로 발급한 경우
- 6. 제8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점검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7. 제8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8.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 8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 · 삭제
-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8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제90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격리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이하 "격리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격리감염병에 대한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감염병의심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 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 3.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 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4. 감염 여부 검사
 -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에 참여한 경우 예방조치 준수
 - 6. 의료업 등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전파가 가능한 기간 동안의 한시 적인 업무 종사 제한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 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2항제4호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 람 (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 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격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격리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제94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격리치료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진찰·격리·격리치료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 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제2항제3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91조(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 2. 일정 장소, 시설의 일시적 폐쇄 등 이용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조
- 3. 일정 시설의 운영시간, 수용인원 등 운영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4.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5. 일정 장소, 시설의 출입자ㆍ이용자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
- 6.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7. 일정 장소, 시설,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8. 일정 시설 출입 시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 진단검사 음성 확인 서 등의 서류 제출을 명하는 것
- 9. 감염병원체 및 매개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10. 일정 장소, 시설, 운송 수단 등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 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11. 상수도ㆍ하수도 등의 이용 및 일정한 장소에서의 수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4.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1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7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

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5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⑧ 제5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이 변경된 경우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소 또는 시설의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⑨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2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①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교도소장은 수감된 감염병환자등에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3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격리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격리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자가(自家),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또는 감염 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 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18조제

3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격리치 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격리치료에 관하여는 제90조제7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격리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94조(감염병환자등의 격리치료 통지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0조제4항 및 제93조에 따른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격리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0조제4 항 및 제93조에 따른 격리치료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치료 해제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격리치료 및 해제 통지의 방법・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5조(감염병의심자의 격리 통지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격리 조 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0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격리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격리 해제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격리 및 해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96조(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 제97조(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 (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8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9조(업무 종사의 일시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 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 할 수 없다.
 - ② 제41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0조(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

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1조(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설치·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2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 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대상(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제9장 의료 · 방역물품

- 제103조(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 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제4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위기 대비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5조(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

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06조(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그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7조(감염병 대비 의료・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기준을 정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의료・방역 물품이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2.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제10장 경비

- 제108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 1. 제5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2. 제11조에 따른 예방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 3.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으로 의료인 등이 한시적으로 방 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 등 경비
 - 4.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5.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6. 제1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 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
 - 7.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8.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 9.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10. 제80조제1항, 제91조제1항제9호, 제9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 에 드는 경비
- 11. 제90조제2항제1호,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격리 또는 장소 이동·이용 제한으로 인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원
- 12. 제9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13. 제91조제4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 14. 제1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 15. 제11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1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제109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 1. 제5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2. 제10조에 따른 검역위원의 배치에 드는 경비
 - 3.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료인 등을 한 시적으로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4.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
 - 5.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동 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6.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드는 경비
 - 7.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8. 제34조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위기대비 훈련에 드는 경비
 - 9.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 10. 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내국인 감염병환자등의 격리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 11.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지

워

- 12. 제9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의사를 배치하는 데 드 는 수당 등 경비
- 13. 제91조제4항에 따른 식수 공급에 드는 경비
- 14.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 15. 제1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1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 제110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제111조(국고 부담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1.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 2.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위한 경비
 - 3.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를 위한 경비
 - 4.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 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가 인력을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6.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7.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가 동원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운영비 등 경비
- 8.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 병관리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에 드는 경비
- 9. 제2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
- 10. 제3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위기대비 훈련에 드는 경비
- 11. 제39조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 12. 제42조에 따른 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운송과 해부 후 처리에 드는 경비
- 13. 제76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 등에 드는 경비
- 14. 제77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 15. 제9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의사를 배치하는 데 드는 수당 등 경비
- 16. 제101조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
- 17.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의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에 드는 경비

- 18.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 19. 제118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 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 20. 제12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112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2.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전할 경비 제11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격리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환 등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14조(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90조에 따른 조사·진찰 및 격리조치에 드는 경비
 - 2. 제93조에 따른 치료비

- 제115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116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제18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요양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3.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4. 제21조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 5.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항제1호, 제2호,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6.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7.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 에 발생한 손실
 - 8.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116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16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1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 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과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7조(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118조(심리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 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심리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리지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9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력한 보건의료인력 및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0조(격리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격리명령을 받은 자,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자 또는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 1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격리명령 또는 격리치료,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3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가병비
 -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 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12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 1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2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23조(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 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 제124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115조 및 제121조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 제12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6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8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 2. 제91조제5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 제12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 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 2.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2장 벌칙

- 제1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 2.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 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 3.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
- 제1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준위고위험병원 체를 보유한 자
 - 2. 제6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한 자
 -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 4. 제12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1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한 자(다만, 공무원은 제외한다)
- 2.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 3. 제53조제4항을 위반한 자
- 4.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5. 제57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 6. 제6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 제60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61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 영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9. 제91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 2.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 인
- 3. 제5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 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 4.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 5.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 제1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격리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90조제4항,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격리치료 명령을 위반한 자
- 제1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동원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80조제4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 4. 제81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 5. 제90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90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른 격리명령 및 제4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 6. 제91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 7.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
-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42조에 따른 해부명령을 거부한 자
 - 4. 제68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5. 제70조를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 7.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 제136조(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131조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

-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제133조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기관을 사칭한 자
 - 2. 제5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60조제4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60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97조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2. 제3급감염병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3. 제91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7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80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 4.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86조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대장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실시대장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93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 ⑤ 제91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4조(정보의 제공 및 수집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 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거나 그 정보가 제 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소독업 신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9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 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소독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8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9조(시신의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2016 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 또는 보조할 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는 2027년도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 제11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13조(방역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관, 역학조사관, 수습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역관, 역학조사관, 수습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으로 본다.
- 제14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사 업지원기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로 본다.
- 제15조(감염병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심의한 사항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

- 의 중이거나 심의한 사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본다.
- 제17조(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 기관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본다.
- 제18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 병의심자 격리시설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 자 격리시설로 본다.
- 제19조(긴급상황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긴급상황실은 제 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긴급상황실로 본다.
- 제20조(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한국건

강관리협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로 본다.

- ② 재산 · 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명의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건강관리협희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희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 제21조(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첨단백신센터가 승계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이 법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설립과 동시에「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첨단백신센터가 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권리와 의무에 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상의 재단법인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명의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 제22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표본감시기관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본다.
-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취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2조 및 제 132조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4조(예방접종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예방접종증 명서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본다.
- 제25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 반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으로 본다.
- 제26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자와 소독업무 종사자가 받은 교육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본다.
- 제27조(소독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소독증명서는 제 8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증명서로 본다.

- 제2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는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심의한 사항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심의한 사항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의2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조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③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제17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④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8조제5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 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⑥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이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3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한다.

제1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감

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 리시설

-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요양소 또는 진료소
- ⑧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한다.
- 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 ⑩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의2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한다.
- 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률」 제79조제2항 각 호의 자료"로 한다.
-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1호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격리 대상"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생"으로 한다.

④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인수 공통감염병
- ⑤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8호의2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82조에 규정된 범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9조, 제131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7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감염병의 예방 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로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12조의4제5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한다.

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7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감염 병환자. 다만,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기록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68조제6항 단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염병"으로 한다.

제85조의2제2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으로 한다.

24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 ②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70조"로 한다.

제3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3조제4항 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40조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0조"로, "같은 법 제18조의2"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하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②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③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같은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4조 및 제65조"로 한다.

③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 (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③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질 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 제3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감염병(제3조제1호 관련)

- 1.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격리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옄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2. 제2급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격리 등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3. 제3급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梅毒)
- 4.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별표 2] 격리감염병(제3조제2호 관련)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두창
- 7. 페스트
- 8. 신종감염병증후군
- 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1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11.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2. 신종인플루엔자
- 13. 디프테리아
- 14. 결핵
- 15. 홍역
- 16. 콜레라
- 17. 장티푸스
- 18. 파라티푸스
- 19. 세균성이질
- 2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21. A형간염
- 22. 폴리오
- 23. 수막구균 감염증
- 24. 성홍열